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201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윤성한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0가단4358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와 2013. 6. 5. 접수 제1385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전경민, 판사 김동현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2 층 호 108.9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 834.5㎡

2.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 89.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835.5 분의 45.201

2. 89.4 분의 4.842

